



2025년도



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 관리지침



질병관리청

6. 감염취약시설 관리

※ 지침 내용을 토대로 감염취약시설 내부 상황 및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할 것을 권고

가. 목적

- 고위험군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·사망 위험 감소

나. 대상

- 감염취약시설 3종 입원·입소자 및 종사자, 방문객

〈감염취약시설 3종〉

- ① 요양병원·장기요양기관(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, 주야간보호기관, 단기보호기관)
- ② 정신건강증진시설[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,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(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)]
- ③ 장애인복지시설[장애인 거주시설,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주간보호시설, 장애인 직업재활시설, 피해장애인쉼터(아동 포함)]

다. 대응체계

- 중앙-지자체-감염취약시설 간 상시대응체계 구축 및 유지
 - 시설 내 코로나19 환자 다수 발생 등 비상 상황 시 즉시 신고를 위한 중앙-지자체-감염취약시설 간 대응체계 유지
 - 지자체는 관할 내 감염취약시설 대상 코로나19 집단감염·확산 등 감염병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하고, 합동전담대응기구를 통해 대응

라. 감염취약시설 관리

- 입소자 및 종사자 건강 모니터링
 -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대상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확인
 - 유증상자 발생 시 신속항원검사(RAT) 및 의료기관 진료를 통한 검사 권고, 입소자·종사자 대상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환기, 소독 등 환경관리 강화, 접촉자 대상 증상 모니터링 지속
 - 접촉자 중 증상 발생 시, 신속항원검사(RAT) 및 의료기관 진료를 통한 검사 권고

〈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〉

구분	신속항원 (RAT)	확인진단 (의료기관 진료)	조치사항
입소자	양성	양성	•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까지 별도 격리공간에 격리 권고 • 의료기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 의뢰 및 이송
		음성	• 증상 호전시까지 마스크 착용 권고 • 손씻기, 기침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철저
	음성	-	• 증상 호전시까지 마스크 착용 권고 • 손씻기, 기침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철저 • 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는 필요시 재검사 권고
		-	
종사자	양성	양성	•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까지 출근자제 및 격리권고
		음성	• 증상 호전시까지 업무배제 권고 • 업무 수행 시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• 손씻기, 기침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철저
	음성	-	• 증상 호전시까지 마스크 착용 권고 • 손씻기, 기침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철저 • 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는 필요시 재검사 권고
		-	

- 격리는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,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허가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
- 중증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출근제한 및 격리 권고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
-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라 하더라도 감염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지속 모니터링 필요

※ 시설 출입자(방문객 포함) 증상 모니터링

- 시설 종사자, 이용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(마스크 착용, 손소독 등) 후 출입
- 유증상자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는 출입 자제
- 출입 전 신속항원검사(RAT) 검사 활용 가능

① (신속항원검사 양성) 출입 제한 및 의료기관 진료를 통한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

② (신속항원검사 음성)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손소독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철저

마. 감염취약시설 집단발생 관리

[집단발생 대비]

1) 감염취약시설 역할

- ☞ (신고) 환자가 7일 이내 2명 이상 발생 시 관할 보건소(합동전담대응팀)에 신고
- ☞ (감염관리) 환기 및 시설·개인 소독 준수
 - 개인위생 수칙 준수
 - 마스크, 체온계,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충분히 비치 및 활용
 - 실내 환경 주기적인 소독(접촉이 많은 부위 중심으로 문지르고 닦기)
 - 2시간마다 10분 이상 자연(창문) 및 기계(공조시설, 배기판, 공기청정기 등) 환기
 - 감염취약시설 유증상 종사자는 개인위생 준수 철저 및 입소자 접촉 최소화
- ☞ (감시) 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대상 증상 모니터링
 - 시설 종사자 출·퇴근 시/업무 중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
 - 기저질환 입소자의 코로나19 의심 증상 구별 주의
 - 시설 촉탁의 적극 활용을 통한 입소자 모니터링 강화
 - 필요 시 신속항원검사(RAT) 또는 의료기관 이송
- ☞ (검사) 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가 코로나19 의심증상 시 신속항원검사(RAT) 실시, 양성 의심 시 신속한 의료기관 진료 권장
- ☞ (예방접종) 코로나19 예방접종 권장

2) 지자체(시도/시군구) 역할

- ☞ (체계) 관할지역 지자체(시도/시군구 담당부서), 의료기관, 감염취약시설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담당자 간 소통 체계 유지
 - 환자 신고 시 감염관리 등 조치 사항 안내 및 환자발생 규모 모니터링 강화
 -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관리
 - 마스크,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관리·유지·지원
- ☞ (예방접종) 코로나19 백신접종 권장 및 이상반응 신고 관리

[집단발생 대응]

1) 감염취약시설 역할

- (신고) 코로나19 환자가 10명 이상 발생 시 관할 보건소(합동전담대응팀)에 신고
- (감염관리) 환기 및 시설·개인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
 -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수시 실내 환경 소독 강화
 - * 특히, 확진자 및 동실 입소자, 담당 요양보호사 개인위생 준수 및 환경 소독 철저
 - 2시간마다 10분 이상 자연(창문) 및 기계(공조시설, 배기판, 공기청정기 등) 환기
 - 집단발생 시 접촉자 유증상 발생 여부 모니터링
 - 종사자 중 유증상 시 입소자 접촉업무 최소화, 신속항원검사(RAT) 실시 및 양성 의심시 업무 배제 권고
 - 주간보호센터 등 감염취약시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 권고
 - 시설 입소자 면회, 외출, 외박 및 프로그램 운영 시 방역수칙 준수 강화
 - 시설 종사자 출·퇴근 시/업무 중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강화
 - 확진자를 위한 별도 격리공간 마련
- (검사) 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신속항원검사(RAT) 실시, 양성 의심 시 신속한 의료기관 진료 권장
- (보고) 시설정보 및 확진자 기초정보 등 수집·공유, 집단발생 보고(관리부서, 보건소)
 - 코로나19 집단발생 대응을 위한 시설·환경, 운영 인력 등에 대한 자체 대응 계획 수립·시행

2) 지자체(시도/시군구) 역할

- (인지·등록) 관할지역 감염취약시설로부터 집단발생 신고 등을 통해 집단발생 인지 시 신속한 현황 확인
-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코로나19 집단발생 등록 및 정보관리

- (조치) 현황 확인, 대응 및 필요 시 현장조사를 통해 방역대응 실시
 - 코로나19 집단발생 대응을 위한 시설·환경, 운영 인력 등에 대한 자체 대응 계획 수립·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비점 보완 지도
 - 확진자 증상 고려 및 중증화 예방을 위해 필요 시 신속한 환자 이송
 - 집단발생 시설에 대한 외부인 방문 제한 또는 별도 공간 면회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강조
 - 필요 시 집단발생 현황 확인 및 긴급 방역물자 지원
- (예방접종) 코로나19 백신접종 권장 및 이상반응 신고 관리

바. 지자체 합동전담대응기구 운영

-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코로나19 집단발생 시 대응 및 집중관리를 위해 합동전담 대응기구('23.8.)를 구성

* 「코로나19 대응 감염취약시설 예방·감시·조사 표준 매뉴얼(제2판), '22.7.18.」 참고

1) 기구 역할 및 현황

- 전파 및 중증 위험도가 높은 감염취약시설 3종*의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등 집중관리

* 요양병원·장기요양기관, 정신건강증진시설, 장애인복지시설

2) 기관별 대비·대응체계 구성

- (권역별 질병대응센터) 시·도 감염취약시설 전담대응지원팀 구성·운영
 - ▶ (평시) 지자체와 정보 공유 및 현황 감시
 - ▶ (시·군·구 요청/심층조사 필요시) 후속조치 및 조사·분석 지원
- (시·도) 시·도 감염예방관리지원기구 및 시·도 전담대응지원팀 구성 및 운영
 - ▶ (평시) 지자체와 감염취약시설 집단발생 정보 공유 및 현황 감시·통계관리, 감염예방관리 교육 훈련·점검 및 지원, 방역물자 관리 및 지원, 감염병관리 행정지도 및 협조 등
 - ▶ (시·군·구 요청/심층조사 필요시) 후속조치 및 조사·분석 지원
- (시·군·구, 보건소) 감염취약시설 집중관리를 위한 합동전담대응팀 구성·운영
 - ▶ (평시) 시·군·구 감염취약시설 담당부서와 시설 및 인적 현황 등 정보 공유 및 상시 모니터링, 방역물자 지원, 감염취약시설 대상 집단발생 현황 통계관리, 감염관리 현황점검, 감염관리 교육 및 행정지도 등
 - ▶ (대규모 집단발생/확진자 지속발생) 상황평가 후 필요 시 현장 역학조사 및 대응, 역학정보 등록 및 관리, 시도 지원 요청 및 시설 지원·관리계획 마련